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38
----------	------

2017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찬성자 15명)
- 나. 발의일자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17일
- 라. 상정결과 :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11월 23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마루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을 증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을 25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며, 이에 따라 총 200명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 정원을 210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4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예산사항 : 비용추계서 참조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개정안 개요

-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을 증원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2007년 4월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휠체어 농구팀 창단, 2012년 7월 장애인 탁구팀 창단, 2016년 9월 장애인 컬링팀 창단으로 현재 3개의 종목에 13억 원의 운영비(인건비, 기본 경기, 일반운영비 등)로 25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음.

최근 3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된 예산 현황을 살펴 보면, 2015년 비장애인 팀은 135억 원, 장애인 팀은 9억 원, 2016년 비장애인 팀은 136억 원, 장애인 팀은 11억 원, 2017년 비장애인 팀은 140억 원, 장애인 팀은 13억 원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예산 중 장애인 팀의 예산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1〉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비장애인팀	비율(%)	장애인팀	비율(%)
2015	13,432,020	93.7	900,000	6.3
2016	13,582,020	92.8	1,050,000	7.2
2017	13,982,703	91.8	1,250,000	8.2
총계	40,996,743	92.8	3,200,000	7.2

- 2015년 동 조례의 개정 이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비장애인팀, 장애인 팀 모두 2016년 9월 컬링팀 창단으로 인해 인원이 증가한 것 외에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원(비장애인 팀 175명, 장애인 팀 2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표2〉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원증감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계	지도자	선수	계	지도자	선수	계	지도자	선수
비장애인팀	158	25	133	162	25	137	168	25	143
장애인팀	17	3	14	17	3	14	25	5	20
총계	175	28	147	179	28	151	193	30	163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서 장애인 스포츠 의무 등급을 구분한 것에 따르면 절단 및 기타 장애(지체장애 포함), 시각장

애, 지적장애(발달장애 포함), 청각장애(언어장애 포함), 뇌성마비 장애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현 종목의 선수들은 지체장애인들에 편중되어 있고 그 외 유형의 장애인은 전무한 실정인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다른 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체장애인들이 선수로 활동하나, 경기도는 청각장애인(볼링, 탁구)과 시각장애인(유도), 경북은 청각장애인(배드민턴, 볼링)과 지적장애인(육상) 등 서울시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선수가 활동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종목 선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3〉 시·도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장애유형 현황

(단위 : 명)

연번	타·시도	종목	인원	유형	장애인가수	재정지립도(%)
계	14		235		2,212,457	45.1
1	강원	사격	2	지체	98,970	19.7
		아이스하키	1	절단 및 기타		
2	경기	배드민턴	3	지체	508,330	60.7
		볼링	2	청각, 지체		
		수영	1	지적		
		양궁	1	지체		
		역도	3	지체		
		유도	3	시각		
		육상	2	지적		
탁구	1	청각				
3	경남	사격	7	지체	179,276	29.8
4	경북	배드민턴	2	청각	168,650	24.3
		볼링	1	청각		

		육상	7	지체5, 지적1		
5	광주	사격	5	지체	68,288	44.2
		양궁	5	지체		
		탁구	5	지체		
6	대구	농구	14	지체	115,983	46.9
		탁구	7	지체		
		테니스	5	지체		
7	대전	수영	7	지체, 지적	71,198	49.3
		양궁	6	지체		
		역도	7	지체, 지적		
		육상	7	지체, 시각, 청각		
		탁구	7	지체		
8	부산	사격	1	지체	168,663	51
		수영	5	지체		
		역도	4	지적		
		육상	1	지체		
9	서울	농구	12	지체	398,908	80.3
		컬링	7	지체		
		탁구	6	지체		
10	울산	댄스스포츠	5	지체	49,014	63.6
		배드민턴	5	지체		
		수영	5	시각, 지체, 지적		
		역도	6	지체, 지적		
		육상	5	시각, 청각, 지적		
11	인천	배드민턴	3	지체	133,855	59.1
		역도	4	지체2, 지적1		
		컬링	6	지체		
12	제주	배드민턴	1	지체	32,989	30.3
		수영	2	지체		
		역도	1	지체		
		육상	1	지체		
13	충남	배구	9	지체	124,721	11
		보치아	7	뇌병변		
14	충북	사격	8	지체, 절단	93,612	28.1
		수영	7	지체, 지적		
		양궁	5	지체, 절단		
		역도	8	지체, 시각, 지적		

-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44만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88만명으로 고용률은 36.1%(〈표4〉 참조)로 전체 인구에 비해 경제활

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인 지체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4〉 '16년 전국장애유형별 장애인 취업현황(15세 이상)

연번	장애유형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상대표준 오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계	2,441,169	100	880,091	36.1	0.022
1	지체장애	1,279,197	52.4	575,715	45.0	0.029
2	뇌병변장애	241,542	9.9	25,258	10.5	0.089
3	시각장애	251,059	10.3	107,753	42.9	0.036
4	청각장애	247,303	10.1	82,304	33.3	0.049
5	언어장애	17,255	0.7	4,932	28.6	0.093
6	지적장애	167,561	6.9	40,245	24.0	0.074
7	자폐성장애	13,035	0.5	2,263	17.4	0.114
8	정신장애	98,636	4.0	10,692	10.8	0.123
9	신장장애	74,346	3.0	17,007	22.9	0.065
10	심장장애	5,583	0.2	1,824	32.7	0.117
11	호흡기장애	11,998	0.5	1,743	14.5	0.133
12	간장애	9,997	0.4	3,958	39.6	0.094
13	안면장애	2,643	0.1	1,354	51.2	0.101
14	장루·요루장애	14,061	0.6	3,397	24.2	0.100
15	뇌전증장애	6,953	0.3	1,646	23.7	0.140

<자료 :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따라서 장애인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고 재정자립도가 상위인 서울(〈표3〉 참조)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팀 25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13억 원으로 10명을 증원할 경우 최소 약 5억 원(〈표5〉 참조)의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후 창단팀의 합속

소운영, 연습장 대여, 이동수단 확보 등 관련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규 창단, 인원 증원 및 관련 예산 증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5〉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10명 증원 시 1인당 인건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비고
계		570,000		
선수인건비	감독 계약직	81,600	40,800×2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별표2>의거 C등급 적용
	선수 계약직	230,400	28,800×8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별표2>의거 E등급 적용
	법정운영비	55,200	4,600×12개월	4대보험, 퇴직금
기본경비 (훈련운영비)	합숙비, 대회참가비, 체육시설사용료, 피복비 등	177,300	17,730×10명	합숙비 1인 2만3천원(150일지원) 체육시설료(월3,200천원) 대회참가비 14,000천원 ※6개대회×1,5000천원×10명 전지훈련비 20,000천원 ※ 국외 2회 지원×1,000천원×10명 피복비 8,000천원 ※ 400,000원×2회×10명
일반운영비	보험료, 교육비, 합숙소 운영비 등	17,500	1,750×10명	휠체어농구, 탁구팀 기준 적용
보상금	격려금, 포상금	8,000	800×10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별표3,4>의거 보상금 500,000원 적용 격려금 1~5명 이내 적용(국내, 국외)

4. 질의 및 답변요지

문 : 장애인체육에 대한 선수인력의 증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소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닌 종목별 배정되는 선수의 인원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무슨 종목의 창단이 필요하며 예산과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고 봄. 또한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전은 가능하나 단체전은 출전 못하는 사례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증원이 필요함.

답 : 국익 및 서울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패럴림픽, 데플림픽 및 전국체전 3개 대회 참가 종목중 우리시 취약종목 및 입상가능 종목을 우선으로 하여 창단계획을 세우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따르면 장애유형이 절단 및 기타 장애(지체장애 포함), 시각장애, 지적장애(발달장애 포함), 청각장애(언어장애 포

함), 뇌성마비 장애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애인직장 운동경기부의 현 종목의 선수들은 지체장애인들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종목 선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고 재정자립도가 상위인 서울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38
----------	---------

제안연월일 : 2017년 11월 23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따르면 장애유형이 절단 및 기타 장애(지체장애 포함), 시각장애, 지적장애(발달장애 포함), 청각장애(언어장애 포함), 뇌성마비 장애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현 종목의 선수들은 지체장애인들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종목 선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고 재정자립도가 상위인 서울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을 25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하며, 이에 따라 총 200명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 정원을 220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 중 “경기인은 총 21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3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를 “경기인은 총 22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④ <u>경기인은 총 200명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 다)의 범위 안에서</u>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 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 을 둘 수 있으며, 각 구 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 다.</p> <p>1. ~ 3. (생략)</p> <p>⑤ ~ ⑧ (생략)</p>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경기인은 총 210명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35명을 포함한 다)의 범위 안에서</u> --- ----- ----- -----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u>경기인은 총 220명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 다)의 범위 안에서</u> --- ----- ----- ----- -----</p> <p>---.</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⑤ ~ ⑧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를 “경기인은 총 22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④ <u>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u>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⑤ ~ ⑧ (생략)</p>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경기인은 총 22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 ⑧ (현행과 같음)</p>